

## 추가약정서

(재건축,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용)

유니온저축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무자 : \_\_\_\_\_ (인)  
주 소 :

채무자는 유니온저축은행(이하 “저축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 
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조 (목적) 이 약정서는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소재 재건축, 재개발 사업  
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.

제 2조 (기 보유 주택) 채무자가 속한 세대<sup>주1)</sup>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  
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주1) “세대”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‘출입국관리법’에 따른 외국인 및  
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상에 배우자, 직계  
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  
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제 3조 (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)

1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실행일부터 대출 전액 상환 전  
까지 제 2조에 명시된 주택 외에 다른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  
주2)하지 않습니다.

주2) 매매, 증여,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.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, 이하 같음

2. 채무자는 본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  
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제 4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보유<sup>주3)</sup>하고 있는 경우  
주3) 다만 대출신청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
2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재건축·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·추가 분담금 대출 실행일로부터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

제 5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향후 3년간 금융기관<sup>주4)</sup>의 주택 관련 대출<sup>주5)</sup>이 제한됩니다.

주4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
주5)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<별표5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재건축·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·추가 분담금 대출 실행일로부터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

